

「서울특별시 지방세입 전자송달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개정사유)
제23조(관할법원) 이 약관 또는 서비스와 관련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3조(관할법원) ① 이 약관에 터잡은 서비스에 관하여 카드사와 회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회원의 주소지 또는 카드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카드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② 할부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에 따른 여전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재판관할 조항 개정
	제 4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6 년 7 월 1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일(시행일 추가)